

○ ○ 경 찰 서

20

수 신 : 성평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제 목 :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

다음과 같이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.

위반 일시			장 소		
위반 행위자 인적사항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	
위 반 사 실 개 요	동기·목적 · 방법·결과				
	위반행위 후 태도와 정황				
	참고사항				
적 용 법 조	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제3항 및 제22조제1항				
출 동 사법경 찰관리	소속: ○○경찰서, ○○지구대(파출소) 계급: 성명:				

○○경찰서장

작 인

※ 귀 기관에서 통보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